

#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 【판시사항】

-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호),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할 때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지만, 이사에게 업무 집행을 지시하거나 이사처럼 업무를 집행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 이러한 법률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는 아니지만,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면서 그가 관여한 업무에 관하여 법령준수의무를 비롯하여 이사와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평석】

- 본 사안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 대법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로 의제되는 것에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대법판결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의해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도 동일하게 해석하겠다는 것을 판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문정해 교수님 추천 판례입니다